



부록

1.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2. 제 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현황



1.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내지 §117
2007. 10. 12(금)부터 4. 9(수)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 법§93①
10. 29(월)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부터	법§49⑩
11. 15(목)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칙§2①
12. 1(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공고·통지<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법§122, §60의3 규칙§26의2③, §51①②
12. 11(화)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사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120일까지	법§53③
12. 11까지 설치 5. 9까지 운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운영은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12. 11(화)부터 4. 9(수)까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① 규칙§2의3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2. 11(화)부터 5. 9(금)까지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10의2① 규칙§2의2
12. 11(화)부터 5. 9(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규칙§27의2① 정금법§34④
12. 11(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없이	법§61①, §63①④ 규칙§28①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3①④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시에(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법§63③④ 규칙§28①③④⑤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시	규칙§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	정 당,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피선거권 조사<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수리 후	법§60의2④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관할위원회에>	정 당,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즉시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신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 전 2일까지	법§60의3 규칙§26의2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영수증사본 제출<관할 선거구위원회에>	"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 규칙§26의2⑥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008. 1. 10(목)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 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③ 규칙§60②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신고 <중앙위원회에>	“	광고 게재일 전일까지	법§137③ 규칙§60②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 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137의2① ⑦ 규칙§60의2
1. 10(목)부터 4. 9(수)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2. 9(토)부터 4. 9(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9(토)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당해 기관에>	입후보예정자	선거일 전 6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②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 일시·진행방법 등 통보<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법§82① 규칙§45④
3. 7(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법§65⑥
3. 10(월)까지	선거사무대행 읍·면·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 <해당위원회,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30일까지	법§13③ 규칙§3③④⑤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 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법§71⑤ 규칙§36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11(화)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법§38③ 규칙§11⑥
3. 17(월)까지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법§64③, §65⑨
3. 20(목)부터 3. 26(수)까지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기간 중	법§48②④, 규칙§19
3. 20(목)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칙§7
	예비후보자의 인쇄물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칙§12①
3. 21(금)부터 3. 25(화)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칙§10
	부재자신고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 대상자		법§38①②③ ⑦ 규칙§11①,②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읍·면의 장		법§38④⑥⑦ 규칙§11③⑤ ⑦⑧⑨
3. 22(토)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법§71⑥
3.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구·시·읍·면의 장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칙§13③
3. 25(화)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읍·면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법§46⑤ 규칙§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규칙§16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등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법§38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6(수)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법§4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칙§16①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칙§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칙§14④
3. 26(수)부터 3. 28(금)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권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칙§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2②
3. 25(화)부터 3. 26(수)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정당·후보자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칙§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⑫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선거구위원회에>	''		규칙§21
기탁금 납부<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49④⑧, §56① 규칙§24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기탁금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받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받은 때)	규칙§24②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 선거연락소 <구·시·군위원회에> 설치·변경·신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없이	법§63①④ 규칙§28①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선임· 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보고<상급 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63①④ 규칙§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선거사무장 등의 선 임·교체신고시에(선 임·교체신고는 신분증 명서의 교부신청을 겸 한 것으로 봄)	법§63③④ 규칙§28①③ ④⑤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	선임·교체신고시	규칙§21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 <당해 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 는 때(교체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신고<관할위원회에>	"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한 때에	정금법§34①④
	정당·정책홍보물 제출(2부) <중앙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할 당부	배부 전까지	법§138④ 규칙§61②
	정당기관지 제출(2부) <중앙위원회,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발행 즉시, 배부 전에	법§139③ 규칙§61②
	후보자 사퇴신고<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칙§23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정 당	사유 발생시	규칙§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 ·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칙§38⑦
	후보자등록 무효통지<후보자, 추천정당에>	"	지체없이	법§52③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 전까지	법§69⑤ 규칙§34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신문광고 게재 신고<중앙위원회에>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광고게재는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법§69⑥ 규칙§34②
	후보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방송일 전 3일까지	법§71⑩ 규칙§36⑦
	방송광고 실시통보<중앙위원회에>	방 송 시 설 경 영 자	방송·방영일 전일까 지	법§70③ 규칙§35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 설명·일 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 송 시 설 경 영 · 관 리 자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2③ 규칙§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 설명·이 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 등 의 통지<정당·후보자에게>	방 송 시 설 경 영 · 관 리 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칙§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의 사회자 선임 ·해임·교체 신고<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연설·대답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 가능)	법§79⑧ 규칙§43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 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 규칙§43②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 최계획 제출<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 전 2일까지	법§81③ 규칙§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칙§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칙§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칙§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	불법선전물을 우송 하려하거나 우송 중 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 ·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현수막 첨부표지 교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 하는 때	법§67 규칙§32
3. 26(수)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법§73⑤ 규칙§38②
	정당추천 선거부정감시단<구·시·군위원회에>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추천<중앙 및 시·도 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등록 마감일 까지	법§10의2②, §10의 3③, 규칙§2의2③, §2의3③
	피선거권 조사<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후	법§49⑧⑩ 규칙§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후보자등록 마감 후	법§150③④⑤ 규칙§71①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법§150 규칙§71①②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②③⑤
3. 27(목)부터 4. 9(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법§49⑪ 규칙§20⑤
3. 27(목)부터 4. 8(화)까지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법§82의2①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 중	법§82의2③
3. 27(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구·시·읍·면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법§46②③⑤ 규칙§18③
3. 29(토)부터 4. 1(화)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구·시·읍·면의 장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규칙§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구·시·읍·면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3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9(토)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65⑤ 규칙§29④, §30④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에>	선거위원회		법§73① 규칙§38②④
	선전벽보 등의 내용 중 경력 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선거위원회에>	제출 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⑤, §65⑩ 규칙§29⑦, §30⑥
	선전벽보 등의 내용 중 경력 등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 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첨부	선거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⑤⑥, §65⑩ 규칙§29⑧, §30⑥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칙§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 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위원회	원고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74① 규칙§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칙§39②
3. 3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 10일까지	법§147⑧
	무투표 통지<부재자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규칙§109①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법§149② 규칙§70⑤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부재자신고인에게>	기관·시설의장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3. 31(월)까지	선전벽보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섬 및 산간 오지 지역의 경우는 3일 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심사 ·결정·통지<신청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장에게>	"	선거일 전 9일까지	법§149② 규칙§70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		법§148③ 규칙§68⑤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부재자신고인에게>	“		법§65⑤ §154①⑤ 규칙§77
	우편투표함 비치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칙§80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칙§78②
	혜·오손된 선전벽보 보완첨부 검인 신청<구·시·군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혜·오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첨부하고자 하는 때	법§64⑧ 규칙§29⑥
4. 1(화)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62② 규칙§88①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 8일까지	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법§162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일 전 2일까지	법§162③
4. 2(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7일까지	법§152① 규칙§75
	부재자투표소 설비	“		규칙§68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설비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칙§68④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 장	기관·시설의 부재자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칙§70④
4. 2(수)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 전 7일에	법§44
	선거인명부 송부<읍·면·동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칙§16③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칙§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선거인명부 확정 후	규칙§14③
4. 3(목)부터 4. 4(금)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148①, §155②, §158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의 기간 중에	법§148② 규칙§68②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구·시·군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 마감 후	법§158②
4. 4(금)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매 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칙§76
	개표소 공고[2개 개표소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에게)]	〃	선거일 전 5일까지	법§173 규칙§95②
4. 6(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 3일까지	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74①②
4. 7(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 전 2일까지	법§161② 규칙§88①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8(화)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에>	구·시·읍·면의 장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 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 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작성·통지<읍·면·동위원회에> 및 그 명단의 지체없는 통지<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4③ 규칙§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인계<투표관리관에게>	''		법§151① 규칙§16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법§147①내지 ⑥ 규칙§67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규칙§95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칙§88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칙§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칙§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칙§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구·시·군위원회에>	''			법§181② 규칙§102③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시	법§151⑤		
선거일 [4. 9(수)]	투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읍·면·동위원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10장	
	부재자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규칙§96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	오후 6시 후에	법§176② 규칙§97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함 등 송부<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법§170①② 규칙§94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11장
	개표록(개표 및 선거록) 송부 <선거구, 시·도위원회에>	"	개표록(개표 및 선거 록) 작성 후	법§185① 규칙§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시·도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규칙§106①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 ·송부<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 및 선거록, 선거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규칙§108
4. 9(수)까지	선거사무장 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에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 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19(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칙§111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규칙§51의3①
4.24(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당해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법§57② 규칙§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선 국고지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때	법§57② 규칙§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법§49⑨
4. 29(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5. 9(금)까지	선거소송 제기<대법원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22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법§57① 규칙§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국가에 납입<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		법§57② 규칙§25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당선소송 제기<대법원에>	정당·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규§6
5. 10(토)부터 5. 16(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 열람기간·장소,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지역구국회의원선 거)	당해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인터넷공개 (선거비용에 한함)<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당해 위원회에>	열람인	열람기간 중(경비 납부 는 교부신청과 동시에)	정금법§42② 정금규§41⑤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 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 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 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6. 8(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칙§51의3②, §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④⑥ 규칙§59의2
10. 9(목)까지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④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 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 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⑤
	보전유예비용의 납입<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 에게>	"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③ 규칙§59의2③ 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칙§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 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 비용 납부<관할선거구위원회에>	당해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및 보전 비용 징수위탁<당해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선거사무장 등이 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 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에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	

2.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상황

1.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 발생사유별 현황

구 분	계	사직	퇴직	사망
계	6	3	3	-
열린우리당	3	2	1	-
한 나 라 당	2	1	1	-
민 주 당	1	-	1	-

▶ 의석승계자 결정상황

일련 번호	정 당 명	상실자			승계자		
		추천순위	성명	상실일자	추천순위	성명	승계일자
1	열린우리당	20	박홍수 (사직)	'05. 1. 10	25	서혜석	'05. 1. 11
2	한 나 라 당	2	박세일 (퇴직)	'05. 3. 25	22	이성구	'05. 3. 29
3	한 나 라 당	14	유승민 (사직)	'05. 10. 12	23	문희	'05. 10. 12
4	민 주 당	4	김홍일 (퇴직)	'06. 9. 28	5	김송자	'06. 9. 29
5	열린우리당	16	정택구 (사직)	'07. 2. 1	26	신명	'07. 2. 2
6	열린우리당	4	김혁규 (퇴직)	'07. 10. 12	27	김영대	'07. 10. 15



2.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발생사유별 현황

계	사직	퇴직	사망	선거법위반(당선무효)	선거무효
19(11)	2	5	1	11(11)	—

※ ()내서는 재선거로 본수에 포함

▶ 발생사유별 내역

선거 구분	선거구명	총선거시 당선인 (정당명)	실시사유	사유발생일 (사유확정일)	선거일	선거결과		
						소속정당명	당선인	투표율
재선거	성남시 중원구 (경기)	이상락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4. 12. 10 ('04. 12. 21)	'05. 4. 30	한나라당	신상진	29.1
	포천시 연천군 (경기)	이철우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5. 3. 25 ('05. 3. 28)		한나라당	고조홍	38.1
	공주시 연기군 (충남)	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5. 1. 27 ('05. 2. 1)		무소속	정진석	37.9
	아산시 (충남)	복기왕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5. 3. 10 ('05. 3. 11)		한나라당	이진구	32.0
	영천시 (경북)	이덕모 (한나라당)	당선무효	'05. 2. 18 ('05. 3. 2)		한나라당	정희수	59.1
	김해시갑 (경남)	김맹곤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5. 3. 25 ('05. 3. 28)		한나라당	김정권	34.2
	동구을 (대구)	박창달 (한나라당)	당선무효	'05. 9. 21 ('05. 9. 15)	'05. 10. 26	한나라당	유승민	46.9
	북구 (울산)	조승수 (민주노동당)	당선무효	'05. 9. 29 ('05. 9. 29)		한나라당	윤두환	52.2
	부천시 원미구갑 (경기)	김기석 (열린우리당)	당선무효	'05. 8. 30 ('05. 8. 19)		한나라당	임해규	29.0
	광주시 (경기)	박혁규 (한나라당)	당선무효	'05. 9. 15 ('05. 9. 9)	한나라당	정진섭	36.8	
	마산시갑 (경남)	김정부 (한나라당)	당선무효	'06. 5. 12 ('06. 5. 12)	'06. 7. 26	한나라당	이주영	28.8

선거 구분	선거구명	총선거시 당선인 (정당명)	실시사유	사유발생일 (사유확정일)	선거일	선거결과		
						소속정당명	당선인	투표율
보궐선거	송파구갑 (서울)	맹형규 (한나라당)	사 직	'06. 2. 13 ('06. 1.31)	'06. 7. 26	한나라당	맹형규	18.1
	성북구을 (서울)	신계륜 (열린우리당)	퇴 직 (피선거권상실)	'06. 2. 15 ('06. 2. 10)		민 주 당	조순형	28.9
	부천시 소사구 (경기)	김문수 (한나라당)	사 직	'06. 4. 25 ('06. 4. 24)		한나라당	차명진	48.0
	남동구을 (인천)	이호웅 (열린우리당)	퇴 직 (피선거권상실)	'06. 9. 14 ('06. 9. 19)	'06. 10. 25	한나라당	이원복	24.7
	해남군 진도군 (전남)	이정일 (민주당)	퇴 직 (피선거권상실)	'06. 8. 24 ('06. 8. 30)		민 주 당	채일병	40.5
	서구 을 (대전)	구논회 (열린우리당)	사 망	'06. 11. 5 ('06. 11. 7)	'07. 4. 25	국민중심당	심대평	33.0
	화성시 (경기)	안병엽 (열린우리당)	퇴 직 (피선거권상실)	'06. 11. 10 ('06. 11. 13)		한나라당	고희선	18.9
	무안군 신안군 (전남)	한화갑 (민주당)	퇴 직 (피선거권상실)	'06. 12. 22 ('06. 12. 27)		민 주 당	김홍엽	54.4

▶ 후보자별 득표현황

선거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 효 투표수	기권 자수
				열 린 우리당 조성준	한나라당 신상진	민 주 노동당 정형주	새천년 민주당 김강자	무소속 강성현		
'05. 4. 30	성남시 중원구	204,521	59,511 (29.1%)	12,717 (21.6)	20,435 (34.7)	16,120 (27.4)	6,815 (11.6)	501 (0.9)	655 (1.1%)	145,010
				무소속 김태식	무소속 양동기	계				
				1,414 (2.4)	854 (1.5)		58,856			



선거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 자수
				열린 우리당 장명재	한나라당 고조홍	새천년 민주당 이운구		계		
'05. 4. 30	포천시 연천군	148,781	56,748 (38.1%)	열린 우리당 장명재	한나라당 고조홍	새천년 민주당 이운구		계	574 (1%)	92,033
				14,634 (26.1)	36,286 (64.6)	5,254 (9.4)		56,174		
	공주시 연기군	163,609	61,963 (37.9%)	열린 우리당 이병령	한나라당 박상일	민주 노동당 유근복	자유민 주연합 조관식	무소속 임덕수	744 (1.2%)	101,646
				21,883 (35.7)	3,959 (6.5)	2,469 (4)	2,385 (3.9)	4,010 (6.6)		
				무소속 정진석				계		
				26,513 (43.3)				61,219		
	아산시	149,239	47,705 (32%)	열린 우리당 임좌순	한나라당 이진구	민주 노동당 김영환	자유민 주연합 원철희	무소속 서용석	476 (1%)	101,534
				11,956 (25.3)	20,023 (42.4)	3,838 (8.1)	5,422 (11.5)	4,809 (10.2)		
				무소속 조병현				계		
				1,181 (2.5)				47,229		
	영천시	86,123	50,872 (59.1%)	열린 우리당 정동윤	한나라당 정희수			계	1,084 (2.1%)	35,251
				24,251 (48.7)	25,537 (51.3)			49,788		
	김해시갑	135,199	46,199 (34.2%)	열린 우리당 이정욱	한나라당 김정권	무소속 권지관		계	335 (0.7%)	89,000
				16,221 (35.4)	28,106 (61.3)	1,537 (3.4)		45,864		

선거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 자수
				열린 우리당 이강철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 노동당 최근돈	자유민 주연합 이명숙	무소속 조기현		
'05. 10. 26	대구 동구을	149,794	70,232 (46.9%)	열린 우리당 이강철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 노동당 최근돈	자유민 주연합 이명숙	무소속 조기현	332 (0.5%)	79,562
				30,789 (44.1)	36,316 (52.0)	1,380 (2.0)	324 (0.5)	1,091 (1.6)		
				계						
				69,900						
	울산북구	96,590	50,412 (52.2%)	열린 우리당 박재택	한나라당 윤두환	민주 노동당 정갑득		계	238 (0.5%)	46,178
				2,711 (5.5)	24,628 (49.1)	22,835 (45.6)		50,174		
	부천시 원미구갑	133,603	38,662 (29%)	열린 우리당 이상수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조용익	민주 노동당 이근선	무소속 안동선	236 (0.7%)	94,941
				12,851 (33.5)	19,424 (50.5)	3,195 (8.4)	1,295 (3.4)	1,166 (3.1)		
				무소속 정인수				계		
				495 (1.3)				38,426		
	광주시	158,059	58,045 (36.8%)	열린 우리당 이종상	한나라당 정진섭	민주당 이상윤	민주 노동당 최종원	무소속 이태희	299 (0.6%)	100,014
				10,154 (17.6)	19,143 (33.2)	8,183 (14.2)	2,140 (3.8)	314 (0.6)		
				무소속 홍사덕				계		
				17,812 (30.9)				57,746		



선거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 자수	
				열린 우리당 조재희	한나라당 최수영	민주당 조순형	민 주 노동당 박창완	계			
'06. 7. 26	서울 성북구을	183,174	52,923 (28.9%)	열린 우리당 조재희	한나라당 최수영	민주당 조순형	민 주 노동당 박창완	계	141 (0.3)	130,251	
				5,276 (10.0%)	21,149 (40.1%)	23,382 (44.3%)	2,975 (5.6%)	52,782			
	서울 송파구갑	150,215	27,215 (18.1%)	열린 우리당 정기영	한나라당 맹형규			계	102 (0.4)	123,000	
				6,289 (23.2%)	20,824 (76.8%)			27,113			
	부천시 소사구	171,432	38,828 (22.6%)	열린 우리당 김만수	한나라당 차명진	민주당 조영상	무소속 길영수	무소속 박종찬	211 (0.5)	132,604	
				11,712 (30.3%)	18,549 (48.0%)	6,860 (17.8%)	386 (1.0%)	1,110 (2.9%)			
								계			
								38,617			
	마산시갑	151,089	43,504 (28.8%)	열린 우리당 김성진	한나라당 이주영	무소속 김호일	무소속 정상철	계	247	107,585	
				10,630 (24.6%)	20,550 (47.5%)	6,201 (14.3%)	5,876 (13.6%)	43,257			
	'06. 10. 25	남동구을	139,208	34,365 (24.7%)	열린 우리당 박우섭	한나라당 이원복	민주당 김완용	민 주 노동당 배진교	시민당 류승구	187 (0.6%)	104,843
					4,203 (12.3)	19,723 (57.7)	3,681 (10.8)	6,338 (18.5)	233 (0.7)		
								계			
							34,178				
해남군 진도군	98,039	39,674 (40.5%)	열린 우리당 박양수	한나라당 설철호	민주당 채일병		계	622 (1.6%)	58,365		
			11,423 (29.3)	3,206 (8.2)	24,423 (62.5)		39,052				

선거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무효 투표수	기권 자수
				한나라당 이재선	국 민 중심당 심대평	한 국 사회당 김윤기		계		
'07. 4. 25	대전 서구을	192,161	63,387 (33%)	24,573 (37.1)	39,858 (60.2)	1,833 (2.8)		66,264	234 (0.4%)	128,774
				한나라당 고희선	열 린 우리당 박봉현	민 주 노동당 장명구		계		
	화성시	241,077	45,345 (18.9%)	26,408 (57)	14,301 (30.9)	5,596 (12.1)		46,305	276 (0.7%)	195,732
				한나라당 강성만	민주당 김홍업	무소속 강성현	무소속 서용석	무소속 박세준		
	무안군 신안군	90,174	49,011 (54.4%)	5,748 (11.9)	24,053 (49.8)	1,423 (3)	678 (1.4)	1,413 (3)	564 (1.2%)	41,163
				무소속 유경일	무소속 이재현			계		
				394 (0.8)	14,681 (30.3)			48,390		

▶ 당선인 현황

선거일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연령	직업	학력	경력
'05. 4. 30	성남시 중원구	한 나 라 당	신상진	48	의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 졸업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성남재개발문제해결 범대위 상임대표
	포천시 연천군	한 나 라 당	고조홍	52	변호사	경희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2년 수료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한나라당 연천포천지구당 위 원장
	공주시 연기군	무 소 속	정진석	44	정치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국일보 논설위원 ○ 제16대 국회의원
	아산시	한 나 라 당	이진구	65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민추협 국제국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선거일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연령	직업	학력	경력
'05. 4. 30	영천시	한 나 라 당	정희수	51	정당인	미국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한국일보 백상경제연구원 원장 ○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해시갑	한 나 라 당	김정권	45	정당인	인제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 김해고 동창회장
'05. 10. 26	대구 동구을	한 나 라 당	유승민	47	정당인	美위스콘신대 경제학과 졸업 ('83. 9~'87. 12)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울산북구	한 나 라 당	윤두환	50	정당인	중앙대 행정대학원 도시환경행정학과 2년 졸	○ 제16대 국회의원(울산북구) ○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부천시 원미구갑	한 나 라 당	임해규	45	정당인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 입후보 ○ 부천시의회 3선의원
	광주시	한 나 라 당	정진섭	53	정당인	서울대 법학과 졸업	○ 경기도지사 정책특보 ○ 한나라당 부대변인
'06. 7. 26	송파구갑	한 나 라 당	맹형규	59	정당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제15, 16, 17대 국회의원
	성북구을	민 주 당	조순형	71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1, 12, 14, 15, 16대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대표
	부천시 소사구	한 나 라 당	차명진	46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졸업	○ 김문수 국회의원 보좌관 ○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부위원장
	마산시갑	한 나 라 당	이주영	54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졸업(법학석사)	○ 제16대 국회의원 ○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06. 10. 25	남동구을	한 나 라 당	이원복	49	정당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제15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중앙연수원장
	해남군 진도군	민 주 당	채일병	59	정당인	국민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 대불대학교 석좌교수
'07. 4. 25	대전 서구을	국민중심당	심대평	66	국민중심당 대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대전시장 ○ 충남지사
	화성시	한 나 라 당	고희선	57	전문경영인	반월중학교 졸업	○ (주)농우바이오 회장 ○ (사)경기도 새마을회 회장

선거일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연령	직업	학력	경력
'07. 4. 25	무안군 신안군	민 주 당	김홍업	56	정당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인권문제연구소 이사 ○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

▶ 미 실시 상황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결원연월일	결원사유	미 실시사유
부산 진구갑	무소속	김병호	'07. 12. 13	퇴직	잔여임기 1년 미만 (공선법 제201조제1항)

제18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008년 10월 1일 인쇄

2008년 10월 15일 발행

편집 겸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팀

- 주소 _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우 427-727)
- 전화 _ (02) 503-0069
- 팩스 _ (02) 502-1939
- <http://www.nec.go.kr>

디자인 및 제작 _ 유앤아이 (02-362-1511)

